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75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2210275) ····· 1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호) ····· 2

가. 검토의견 ····· 2

나. 국토교통부 의견 ····· 7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2210275)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9조제2항[1]에 따라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임·해촉될 수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의학적 용어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함.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10조[2]는 "심신장애인"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하고

---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2)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있고, 구「심신장애자복지법」[3]은 “심신장애(心身障碍)”를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한 바 있음.

현행법의 “심신장애”는 사전적 의미인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한자가 병기되지 아니하여 구「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입법례인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함과 아울러 중의적인 용어를 정비[4]하려는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해임·해촉 사유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임·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

3) 구「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제명이 변경(1989. 12. 30. 시행)되었음.

구「심신장애자복지법」 [법률 제375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증보판), 2023. 12., p.6

-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게 한다.

반드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심신장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심신장애” 용어 정비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

연번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발의일
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03)	법제사법위원회	2025. 4. 21.
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5)	정무위원회	2025. 4. 22.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6)		2025. 4. 30.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7)		2025. 4. 30.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18)	기획재정위원회	2025. 4. 22.
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19)	교육위원회	2025. 4. 22.
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025. 4. 22.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1)		2025. 4. 30.
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02)	국방위원회	2025. 4. 21.

연번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발의일
1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42)	행정안전위원회	2025. 4. 22.
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58)	행정안전위원회	2025. 4. 30.
1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2025. 4. 22.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57)		2025. 4. 30.
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025. 4. 22.
1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9)		2025. 4. 30.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2)		2025. 4. 30.
1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3)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 4. 22.
1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5)		2025. 4. 30.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43)	환경노동위원회	2025. 4. 22.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63)		2025. 4. 30.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036)	**국토교통위원회**	2025. 4. 22.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4)		2025. 4. 30.

연번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발의일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3)		2025. 4. 30.
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2210275)**		**2025. 4. 30.**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과 ‘심신장애’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객관적인 해임 또는 해촉 기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본인이 진단 등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단 등이 없어 해촉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